

2. 사회복지사업법령 중 사회복지사 제도 관련 조항

사회복지사업법 [법률 제17782호, 2020. 12. 29., 일부개정]	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1236호, 2020. 12. 8., 일부개정]	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[보건복지부령 제773호, 2020. 12. 31., 타법개정]
<p>제11조(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)</p> <p>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. 다만, 자격증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9. 12. 3.>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·2급으로 하되, 정신건강·의료·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·의료사회복지사·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10. 24., 2018. 12. 11.></p> <p>③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, 정신건강사회복지사·의료사회복지사·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. <개정 2018. 12. 11.></p> <p>④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별·영역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8. 12. 11.></p> <p>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2. 11.></p> <p>⑥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,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. <신설 2020. 3. 31.></p> <p>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. <신설 2020. 3. 31.></p> <p>[전문개정 2011. 8. 4.]</p>	<p>제2조(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)</p> <p>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별·영역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. <개정 1999. 10. 30., 2020. 12. 8.></p> <p>②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3. 15., 2012. 8. 3.></p>	<p>제3조(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등) ① 영 별표 1, 별표 1의2 및 별표 3에서 “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”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. <개정 2007. 3. 7., 2008. 3. 3., 2010. 3. 19., 2018. 5. 2., 2019. 8. 12.></p> <p>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1의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관실습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, 법인, 시설 또는 단체를 매년 1회 이상 선정하여 공고해야 한다. <신설 2019. 8. 12.></p> <p>[제목개정 2019. 8. 12.]</p>

<p>사회복지사업법 [법률 제17782호, 2020. 12. 29., 일부개정]</p>	<p>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1236호, 2020. 12. 8., 일부개정]</p>	<p>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[보건복지부령 제773호, 2020. 12. 31., 타법개정]</p>
	<p>제25조(권한의 위탁) ① 삭제 <2012. 8. 3.> ②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의 수집·관리·보유 및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(이하 “전담기구”라 한다)에 위탁할 수 있다. <신설 2009. 11. 30., 2010. 3. 15., 2018. 4. 24.> 1. 삭제 <2018. 4. 24.> 2. 삭제 <2018. 4. 24.> ③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중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의 지원·육성에 관한 업무는 중앙협의회에,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업무는 협회에 위탁한다. <개정 1999. 10. 30., 2004. 7. 30., 2008. 2. 29., 2009. 11. 30., 2010. 3. 15.> ④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정부가 설립·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복지 지도·훈련 또는 시설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<신설 2004. 7. 30., 2008. 2. 29., 2009. 11. 30., 2010. 3. 15., 2012. 8. 3.> 1.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종사자에 대한 지도·훈련업무 2.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업무 [제목개정 2012. 8. 3.]</p>	<p>제4조(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신청등) ①영 제2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자격증(이하 “자격증”이라 한다)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급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에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00. 1. 26., 2002. 12. 31., 2008. 11. 5., 2018. 5. 2., 2019. 6. 12., 2020. 12. 11.> 1. 삭제 <2002. 12. 31.> 2. 영 별표 1의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(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를 제외한다) 3. 사진(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.5센티미터, 세로 4.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2장 ②자격증을 잃어버려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고,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00. 1. 26., 2008. 11. 5., 2019. 6. 12., 2020. 12. 11.> 1. 혈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: 사회복지사 자격증 2.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. 이름이 바뀐 경우: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기본증명서 1부 나.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: 주민등록표 초본 1부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하되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</p>

<p>사회복지사업법 [법률 제17782호, 2020. 12. 29., 일부개정]</p>	<p>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1236호, 2020. 12. 8., 일부개정]</p>	<p>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[보건복지부령 제773호, 2020. 12. 31., 타법개정]</p>
		<p>에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.</p> <p>3.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: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누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하여는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8조에 따른다. <신설 2020. 12. 11.></p> <p>④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복지사자격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복지사자격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. <개정 2008. 11. 5., 2019. 6. 12., 2020. 12. 11.></p> <p>⑤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로 1만원을 납부해야 한다. <개정 2000. 1. 26., 2008. 11. 5., 2019. 6. 12., 2020. 12. 11.></p> <p>[제목개정 2008. 11. 5.]</p>
	<p>제25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의 장(법 제9조, 제12조 및 제13조와 이 영 제25조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 또는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<개정 2012. 8. 3.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사무 2. 법 제9조에 따른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·육성에 관한 사무 3. 법 제10조에 따른 지도와 훈련에 관한 사무 	

<p>사회복지사업법 [법률 제17782호, 2020. 12. 29., 일부개정]</p>	<p>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1236호, 2020. 12. 8., 일부개정]</p>	<p>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[보건복지부령 제773호, 2020. 12. 31., 타법개정]</p>
	<p>4. 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</p> <p>5. 삭제 <2019. 6. 11.></p> <p>6. 법 제1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</p> <p>7. 법 제13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교육에 관한 사무</p> <p>8. 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</p> <p>9. 법 제30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합병에 관한 사무</p> <p>10.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</p> <p>11. 삭제 <2018. 4. 24.></p> <p>② 보건복지부장관(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, 지방자치단체의 장(해당 권한이 위임·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 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, 같은 영 제19조 제1호,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8. 3., 2018. 4. 24., 2019. 6. 11.></p> <p>1.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에 관한 사무</p> <p>2. 법 제11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</p> <p>3. 법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무</p> <p>4. 법 제44조에 따른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무</p> <p>[본조신설 2012. 1. 6.]</p>	
<p>제11조의2(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</p>		

사회복지사업법 [법률 제17782호, 2020. 12. 29., 일부개정]	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1236호, 2020. 12. 8., 일부개정]	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[보건복지부령 제773호, 2020. 12. 31., 타법개정]
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. <개정 2017. 10. 24.>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.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 [전문개정 2011. 8. 4.]		
		제4조의2(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)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. 1. 의료사회복지사: 의료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갖추고, 5년 이상의 의료사회복지사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이 수련지도자로 상시 근무하는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(같은 호 마목에 따른 정신병원은 제외한다) 2. 학교사회복지사: 학교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갖추고, 5년 이상의 학교사회복지사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이 수련지도자로 상시 근무하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② 영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과정”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을 말한다.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의 지정, 제2항에 따른 수련과정의 운영 및 실태 조사 등에

<p>사회복지사업법 [법률 제17782호, 2020. 12. 29., 일부개정]</p>	<p>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1236호, 2020. 12. 8., 일부개정]</p>	<p>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[보건복지부령 제773호, 2020. 12. 31., 타법개정]</p>
		<p>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[본조신설 2020. 12. 11.] [중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<2020. 12. 11.>]</p>
<p>제11조의3(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.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. 자격증을 대여·양도 또는 위조·변조한 경우 4.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5.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,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.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<p>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려는 경우에는 제46조에 따른 한국 사회복지사협회의 장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<신설 2020. 3. 31.></p> <p>③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3. 31.></p> <p>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을 재교부하지 못한다. <신설 2017. 10. 24., 2020. 3. 31.> [본조신설 2016. 2. 3.]</p>		<p>제4조의3(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) ① 법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. <개정 2019. 6. 12., 2020. 12. 11.></p> <p>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에 따른 송달주소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를 열람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. <신설 2019. 6. 12.> [본조신설 2016. 8. 3.] [제4조의2에서 이동, 중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<2020. 12. 11.>]</p>

<p>사회복지사업법 [법률 제17782호, 2020. 12. 29., 일부개정]</p>	<p>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1236호, 2020. 12. 8., 일부개정]</p>	<p>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[보건복지부령 제773호, 2020. 12. 31., 타법개정]</p>
<p>제11조의4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 [본조신설 2016. 2. 3.]</p>	<p>제26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)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. <개정 2019. 6. 11.>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. <신설 2019. 6. 11.> [전문개정 2008. 10. 28.]</p>	
<p>제12조(국가시험) ①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되, 시험의 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 ③ 제1항에 따라 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금액을 응시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. ④ 시험 과목, 응시자격 등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11. 8. 4.]</p>	<p>제3조(국가시험의 시행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의 국가시험(이하 "시험"이라 한다)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3. 15.>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기관을 시험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관리업무를 위탁한다. <신설 2002. 12. 26., 2007. 10. 31., 2008. 2. 29., 2010. 3. 15.> 1. 시험에 관한 조사·연구 등을 통하여 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2.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비영리법인 3. 「한국산업인력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③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·시험장소·시험과목·응시원서의 제출기간·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2. 12. 26., 2008. 2. 29., 2009. 11. 30., 2010. 3. 15., 2012. 5. 1.> ④ 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며, 그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. ⑤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이상, 전 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.</p>	

사회복지사업법 [법률 제17782호, 2020. 12. 29., 일부개정]	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1236호, 2020. 12. 8., 일부개정]	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[보건복지부령 제773호, 2020. 12. 31., 타법개정]
	<p>제4조(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) ①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별표 3과 같다.</p> <p>②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(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 <신설 2002. 12. 26., 2007. 12. 31.></p> <p>③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합격자를 결정·발표하고,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(이하 "협회"라 한다)에 통보하여야 한다. <신설 2002. 12. 26., 2008. 2. 29., 2010. 3. 15.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성명 및 주소 2. 시험 합격번호 및 합격연월일 <p>[제목개정 2002. 12. 26.]</p>	

* 사회복지사업법령 자료보기 : 국가법령정보센터(<http://www.law.go.kr>)